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개최일시	2021년 10월 12일 오후 2시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노명희, 송기창, 심석영, 심채연, 여인권, 윤휘수, 이성림, 홍규덕, 전라옥 이정규(간사)	기록자(간사)	김규양	기록일	2021.10.12.	
		불참의원	김홍갑, 홍석환			
		기타참석자	특수대학원교학팀장 김귀정, 대학원교학팀장 조선미			
안건	1. 특수대학원 학칙 개정(안) 2.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3. 대학원 학칙 개정(안)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정(3인)					
배포자료 및 기타	대학평의위원회 부의안건 1부					
■ 심의(자문) 사항						
○ 의장은 총 위원 13명 중 9명이 참여하여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						
[안건] 특수대학원학칙 개정(안)						
○ 의장은 첫 번째 특수대학원 학칙개정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특수대학원교학팀 김귀정 팀장이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송기창 의원은 문법적으로는 용어를 ‘영·유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다. 또한, 별표1, 별표2의 개정사항 적용을 부칙 제2조(적용례)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2022학년 1학기부터 졸업생, 재적생에게 적용하게끔 각각 명시했는데, 항을 통합하여 재적생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항을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다.						
○ 특수대학원교학팀장은 용어를 ‘영·유아’에서 ‘영유아’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운뎃 점을 생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학과 연혁 상에서는 원격대학원 유아교육정보전공으로 최초에 신설되었다가, 이후 ‘영·’을 추가하였음을 안내하다.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송기창 의원의 제안대로 통합하여 ‘[별표 1],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겠음을 알리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칙 제2조(적용례)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안건을 통과시키다.						
▶ 심의 결과						
- 특수대학원학칙 개정(안) 중 부칙 제2조(적용례)의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별표 1],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로 명시						
- 의장과 의원들은 그 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원안대로 심의하다.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제

0/21주

040220

[안건2]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 의장은 두 번째 경영전문대학원 학칙개정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팀 이정규 팀장이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전라옥 의원은 본 규정의 시행일과 상관없이 입학취소의 건이 발생하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해야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팀장은 본 개정의 취지가 종전 학칙에 의해서 입학했더라도, 입학 취소의 경우가 발생하면 본 개정에 의해 입학취소가 될수 있다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 전라옥 의원은 개정되는 학칙을 적용하는 시점만 명시되어 있는데 언제 입학생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정한 바가 없는데, 이는 소급적용을 무한대로 열어두는 것인지 대해 질의하며, 학칙에 근거를 마련하여도, 추후 소급에 대해 시비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를 표하다.
- 기획팀장은 과거 입학취소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한 학생의 경우라도 본 개정안을 통해 입학취소가 처리가능함을 부연설명하다.
- 송기창 의원은 지난 3차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타대학원(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사항과 동일 한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팀장은 동일한 사항이라고 답변하다.
- 송기창 의원은 향후에는 각 대학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되는 학칙 개정(안)의 경우에는 일괄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요청하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다.

▶ 심의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개정(안)에 동의하고 원안대로 심의하다.

[안건3] 대학원 학칙개정(안)

- 의장은 세 번째 대학원 학칙개정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대학원교학팀 조선미 팀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사유, 개정 배경, 학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다.
- 송기창 의원은 제10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서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이 '2년 이상' 에서 '2년' 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이 '4년 이상' 에서 '4년' 으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밝히고, 시행일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하는 부분도 동의함을 밝히다. 제20조(등록) 중 "수료학점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필요한 학기만큼 추가적으로 학점 등록을 해야한다" 부분에서 수료학점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료요건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다. 또한, 작곡학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소수 인원의 학과가 세부전공(작곡전공, 지휘전공, 이론전공)을 과도하게 세분화할 시, 과도한 과목 개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다. 해당 사항은 대학원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결
재

이/26 주

2021.04.26

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되는 사항임을 알리고 의문을 제기하다.

- 전라옥 의원은 학과의 세부전공이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음악학과를 음악학과, 작곡학과로 나누고 세부전공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학과 내에 세부전공을 작곡 지휘전공, 작곡 이론 전공 등을 두는 방식이 왜 불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
- 이성립 의원은 연주학박사는 작곡전공이고, 철학박사는 이론전공인데, 작곡을 창작하여 연주하는 부분이 있고 작곡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철학으로 간다라는 기준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기창 의원은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다.
- 홍규덕 의원은 제10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개정사항은 본교 타 학과 및 타대학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음악대학 내에 일부 교수님들이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그리고 재학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12년 정도로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작곡학과 신설은 자칫 잘 못하면 위인설관의 경우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대학에서 특화할 전공, 향후 교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다.
- 대학원교학팀장은 의원들께서 주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을 하다. 졸업을 위한 수료 요건과 수료학점에 대한 논의는 지난 규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데, 학점 등록을 하게된다면 수료학점을 기준으로 해야된다는 의견에 의해 제20조(등록)에서 '추가등록'을 '추가적으로 학점등록'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리다. 현재 음악학과에서는 통합된 교과목은 없는 상태이며, 5개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향후 본 학칙이 개정되면 그에 맞추어 음악학과에서는 학과 내규를 개정할 것임을 안내하다. 현재 재학생들은 6학기제로 인지하고 입학한 하였고, 학칙이 개정되면 2년에 맞춰 학과 내규가 개정이 필요함을 안내하다. 학과의 세부전공을 과도하게 세분화 할 경우 각 전공 교과목을 신설해야되는 것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원교학팀에서도 100% 공감하고 있음을 알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을 위해 내부 논의가 필요함을 알리다. 재학연한을 보다 유동적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들이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의해 현재처럼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재학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재적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위원들에게 알리다.
- 의장은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다. 일반적으로 학석사 연계, 석박사 연계를 대학에서는 권장하고 있고, 학과에서 이를 더 지원해야하는 상황인데 반해, 현재 개정안은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이 존재함을 지적하다. 수업연한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2년씩 총 4년이지만,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으로 각각 했을때와 수업연한이 동일함을 지적하다. 또한, 재학연한은 경우에는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10년 총 16년이지만, 석박사 통합과정은 10년으로 오히려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학석사 통합과정의 경우는 5년으로 각각 했을 때 학사 4년, 석사 2년 보다 수업연한을 단축을 하고 있는데,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은 동일하고, 재학연한은 오히려 제한하는 형태임을 알리다.
- 대학원교학팀장은 재학연한은 개정하지 않고, 수업연한만 계속 개정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문제임을 알리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할 것임을 안내하다.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는 차이가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결 재
	0/307		

없지만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연계 통합과정에서는 논문을 쓰기 위한 요건 부분에서는 단축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대학평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단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것임을 위원들에게 안내하다.

- 홍규덕 의원은 대학원교학팀장이 본 학칙 개정에 부연 설명 시 거론한, 수업연한과 관련 중국 유학생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대학원교학팀장은 현재 해당 학생은 5학기가 진행중이고, 2022학년도에는 6학기가 되며, 현재 졸업요건에 대해서는 충족을 위해 진행 중임을 안내하고, 본 학칙 개정의 결과에 따라 영향은 없는 것임을 안내하다.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모든 재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안내하며, 대신 학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재학생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리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다.

▶ **심의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대학원 학칙개정(안)에 동의하고 원안대로 심의하다.

[안건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정

- 의장은 세 번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팀 이정규 팀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의장은 대학평의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3인을 추천해야함을 알리며, 대학평의위원회 구성과 맞게끔 교수평의원, 학생평의원, 직원평의원, 동문평의위원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다.
- 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홍규덕 의원, 이성립 의원, 심석영 의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인으로 선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의장은 상기 3인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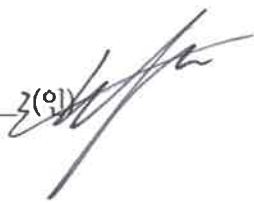
▶ **심의 결과**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홍규덕 의원, 이성립 의원, 심석영 의원이 선정되다.

- 의장은 15시에 대학평의위원회를 종료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끝.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여 인 권</u> (인) 	부위원장 <u>윤 휘 수</u> (인) 
의 원 <u>송 기 창</u> (인) 	의 원 <u>노 명 희</u> 
의 원 <u>홍 규 덕</u> (인) 	의 원 <u>이 성 림</u> (인) 
의 원 <u>전 라 옥</u> (인) 	의 원 <u>심 채 연</u> (인) 
의 원 <u>심 석 영</u> (인) 	